

강남구립도서관(세곡마루도서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 10. 15.

복지문화위원회

의안 번호	415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9. 30. 강남구청장(문화도시과)

나. 상정의결

- 제32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2024. 10. 15.)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미래문화국장 : 문경수)

가. 제안이유

- 세곡마루도서관의 운영을 강남문화재단에 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사업의 대행 등)에 따라 강남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세곡마루도서관 운영 및 시설관리
- 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추진근거

가) 「도서관법」 제29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나) 「도서관법 시행령」 제25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및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및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공공도서관의 설립 육성 등) 및 제12조(운영의 위탁)

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사업) 및 제27조(사업의 대행 등)

2) 필요성 : 강남구 대표도서관인 도곡정보문화도서관과 유일 영어도서관인 일원라운영어도서관 및 세곡마루도서관을 다년간 운영한 경험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한 강남문화재단에 도서관 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탁하여 도서관 서비스의 양적·질적 개선 도모

○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1) 위탁 대상 사무 : 세곡마루도서관 운영 및 시설관리

2) 위탁 범위

가) 위탁대상시설 관리 및 운영

나) 도서 열람·대출 관련 업무, 도서자료 관리

다) 문화강좌 및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라) 도서관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제반 업무

마)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등)

구 분	소재지	면 적	열람석	장서수
세곡마루도서관	강남구 현릉로590길 68, 커뮤니티센터 2층(세곡동)	92㎡	15석	11,365권 (2024.9.기준)

○ 위탁기간 : 2025. 1. 1.~2027. 3. 31.(2년 3개월)

※ 타 강남구립도서관(도곡정보문화도서관 포함 19개소) 계약만료(2027. 3. 31.)와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체결

○ 위탁기관 : 강남문화재단

○ 위탁자 선정방식 : 수의계약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위탁예산 : 연간 185,794천원[구비 100%]

(단위:천원)

구 분	계	인건비(명)	운영비	독서진흥 행사비
세곡마루도서관	185,794	153,617(2명)	25,177	7,000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미영)

- 도서관은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갖고 운영되는 대표적인 문화시설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고 안정적으로 도서관을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고, 그동안 위탁을 통해 도서관 운영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관리위탁의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사료됨.
- 강남문화재단을 수탁자로 선정하려는 부분은 강남문화재단의 설립 목적이 문화예술진흥과 국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있다는 점, 현재 재단이 도곡정보문화도서관과 일원라운영어도서관을 수탁 운영하고 있다는 점 그 밖의 재단의 사업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최근 3년간 민간위탁 사무감사 결과 기본급 착오 적용, 민간위탁 지도·점검 미흡, 채용 부적정 등 구립도서관 위탁 업무 전반에 걸쳐 상당한 지적이 있었는데, 위탁 사무 관리 감독에 대한 부서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되며, 향후 집행부 차원에서 공공위탁, 민간위탁, 행정재산 관리 위탁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강남구립도서관(세곡마루도서관) 위탁 동의안. 끝.

강남구립도서관(세곡마루도서관) 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415
----------	-----

제출년월일 : 2024. 9. 30.
제출자 :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 문화도시과

1. 제안이유

세곡마루도서관의 운영을 강남문화재단에 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사업의 대행 등)에 따라 강남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세곡마루도서관 운영 및 시설관리

나. 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추진근거

가) 「도서관법」 제29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나) 「도서관법 시행령」 제25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및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및 제19조의5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공공도서관의 설립 육성 등) 및 제12조(운영의 위탁)

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사업) 및 제27조(사업의 대행 등)

2) 필요성 : 강남구 대표도서관인 도곡정보문화도서관과 유일 영어도서관인 일원라운영어도서관 및 세곡마루도서관을 다년간 운영한 경험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한 강남문화재단에 도서관 운영 및 시설 관리를 위탁하여 도서관 서비스의 양적·질적 개선 도모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1) 위탁 대상 사무 : 세곡마루도서관 운영 및 시설관리
- 2) 위탁 범위
 - 가) 위탁대상시설 관리 및 운영
 - 나) 도서 열람·대출 관련 업무, 도서자료 관리
 - 다) 문화강좌 및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라) 도서관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제반 업무
 - 마)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등)

구 분	소재지	면 적	열람석	장서수
세곡마루도서관	강남구 헌릉로590길 68, 커뮤니티센터 2층(세곡동)	92㎡	15석	11,365권 (2024.9.기준)

마. 위탁기간 : 2025. 1. 1.~2027. 3. 31.(2년 3개월)

※ 타 강남구립도서관(도곡정보문화도서관 포함 19개소) 계약만료(2027. 3. 31.)와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체결

바. 위탁기관 : 강남문화재단

사. 위탁자 선정방식 : 수의계약

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위탁예산 : 연간 185,794천원[구비 100%]

(단위:천원)

구 분	계	인건비(명)	운영비	독서진흥 행사비
세곡마루도서관	185,794	153,617(2명)	25,177	7,000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도서관법

제29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때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국·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 도서관법 시행령

제25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국공립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국공립 공공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도서관은 제외한다)은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작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의 도서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관(分館), 이동도서관 등을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출연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공공도서관의 설립 육성 등)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독서의 진흥을 위해 필요시 구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할 때 그 업무를 개인, 비영리 법인·단체 및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사업) ① 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7.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및 시설 운영·관리

제27조(사업의 대행 등)

① 재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구 행정사무 중 일부를 재단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